



제389회국회(임시회)
제 1 차 교 육 위 원 회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대학원생 포함 및 재학기간 이자면제〉

■ 신영대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109351호)

2021. 7.

교 육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이승재

목 차

I . 제안경위	1
----------------	---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	---

III . 검토의견	3
------------------	---

※ 참고자료

1.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대안,2110256) 신·구조문대비표	6
---	---

I .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신영대 · 이상직 · 강선우 · 오영훈 · 이개호 · 김성주 ·

주철현 · 위성곤 · 양정숙 · 허 영 의원(10인)

2. 발의연월일 : 2021. 4. 8.

3. 회부연월일 : 2021. 4. 9.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신영대 의원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학자금을 대출하고 그 원리금은 소득이 발생한 후에 소득수준에 따라 상환하도록 하는 제도임.

그런데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은 고액의 등록금을 부담하는 대학원생은 이용할 수 없어 대학원 진학 및 학업 수행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대출 대상을 대학원생까지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

또한, 대학생의 재학기간에도 이자를 가산함으로써 취업난 가중으로 취업시기가 늦어지고 있는 청년들의 대출금 상환 부담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학자금대출 대상에 대학원생을 포함하고, 재학기간에 발생하는 이자를 면제하도록 함으로써 대학생의 학자금대출 상환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안 제3조 및 제16조의2).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대상범위에 대학원생을 포함하고, 재학기간 중 이자를 면제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3. (생략) 4. “대학생”이란 고등교육기관에 재학(입학 또는 복학 예정인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있는 학생(<u>외국인 및 대학원생은 제외한다</u>)을 말한다. 5. ~ 8. (생략) 9. “졸업”이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정을 마친 <u>경우</u> 를 말한다. 10. ~ 13. (생략)	제3조(정의) ----- -----. 1. ~ 3. (현행과 같음) 4. ----- ----- ----- -- <u>대학원생을 포함하며, 외국인</u> <u>은</u> -----. 5. ~ 8. (현행과 같음) 9. ----- ----- <u>경우</u> <u>(수료를 포함한다)</u> -----. 10. ~ 13. (현행과 같음)
제16조의2(이자의 면제) 채무자가 「병역법」에 따라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로 복무하는 경우 해당 복무기간에 발생하는 학자금대출 이자를 면제한다. 1. 「병역법」 제16조에 따른 <u>현역병</u> 2. 「병역법」 제21조에 따른 <u>상근예비역</u> 3. 「병역법」 제2조에 따른 사회	제16조의2(이자의 면제) -----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기간에</u> ----- -----. 1. ----- <u>현역병의 복무기간</u> 2. ----- <u>상근예비역의 복무기간</u> 3. -----

복무요원 및 <u>대체복무요원</u> <신 설>	-----<u>대체복무요원의 복</u> <u>무기간</u> 4. <u>대학생의 재학기간(휴학기간은 제외한다)</u>
--	---

개정안은 고등교육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대상에 대학원생을 포함하는 한편, 해당 대출금의 재학기간 중에 발생하는 이자를 면제를 포함하려는 것임.

그런데, 동 법률은 최근 개정(2021.5.21.)¹⁾되어 대상범위에 대학원생이 포함되었고, 저소득층 및 다자녀 가구의 자녀에 대한 대학생 재학기간 이자 면제가 신설되어 개정안의 취지가 일부 반영되어 있으므로 개정안 심사시 이를 참고할 필요가 있음.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 주요 내용 (2022.1.1. 시행 예정) >

- 대학원생 포함 및 이에 따른 대출·상환 규정의 조정
- 저소득층 및 다자녀가구 자녀인 대학생의 재학기간 이자면제
- 자격요건 완화(신용·성적 요건 폐지)

국회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 결과에 따르면, 재학 중 이자면제를 모든 대학생을 대상으로 확대하여 실시할 경우 향후 5년간 1,482억원²⁾의 추가 재정소요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됨

1)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110256) 심사 및 개정 경과
2021.03.25 제385회국회(임시회) 제2차 교육위 법안심사소위 의결(대안반영폐기) → 신영대 의원안 발의(2021.04.08.)
2021.04.21 제386회국회(임시회) 제1차 교육위 전체회의 대안 상정
2021.04.26 제386회국회(임시회) 제2차 교육위 전체회의 대안 의결
2021.05.21 제387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결
2) 시행예정인 저소득층 및 다자녀 가구의 자녀에 대한 대학생 재학기간 이자 면제 포함

< 대학원생 ICL 지원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2~2026년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2	2023	2024	2025	2026	합계	연평균
재학기간 이자면제 (안 제16조의2)	29,545	29,816	29,856	29,610	29,366	148,193	29,639

- 주: 1. 법률 18194호 제16조의2에 따른 재학기간 이자지원대상 범위를 기초·차상위·다자녀가구의 학자금 대출 및 4구간 이하 생
활비대출로 가정한 값으로 실제 지원범위 및 대출비율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는 변동될 수 있음
2. 2019년 대출잔액 추정값 대비 실제값 비율을 보정계수로 적용한 결과로, 학년별 휴학을 및 휴학기간 등에 따라 추가재정
소요는 변동될 수 있음
3. 대학원생 재학기간 이자지원액은 제외한 결과임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문 의 처

02)6788-5186

[참고자료1]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대안, 2110256)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3조(정의)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4. “대학생”이란 고등교육기관에 재학(입학 또는 복학 예정인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있는 <u>학생(외국인 및 대학원생은 제외한다)</u> 을 말한다.	4. ----- ----- <u>학생(외국인은 제외한다)으로 전문학사학위 과정·학사학위 과정·전문기술석사학위 과정·석사학위 과정 또는 박사학위 과정을 이수하는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u> 을 말한다.
5. ~ 8. (생략)	5. ~ 8. (현행과 같음)
9. “졸업”이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정을 <u>마친</u> 경우를 말한다.	9. ----- ----- <u>마치는 경우를 말하며, 그 구체적인 기준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u>
10. “장기미상환자”란 졸업 후 3년이 지날 때까지 상환내역이 없는 채무자 또는 상환(자발적 상환을 포함한다)이 개시된 후 3년까지의 상환액이 <u>대출원리금의 100분의 5 미만인</u> 자를 말한다.	10. ----- <u>일정 기간이 경과할 때까지의</u> ----- ----- ----- <u>대출원리금의 일정 비율 미만인 채무자</u> 를 말하며, 구체적인 경과기간별 <u>대출원리금의 상환 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11. ~ 13. (생략)	11. ~ 13. (현행과 같음)
제9조(자격 요건) ① 교육부장관이 대학생에 대하여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구소득분위 및 다자녀 가구 해당 여부, <u>학점, 성적 석차, 연령 및 개인신용평점</u> 등의 자격요건을 정하여 고시한 후 그에 따라 대출할 수 있다.	제9조(자격 요건) ① ----- ----- ----- <u>학점, 연령</u> -----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10조(대출 종류 및 한도) ① (생 략)

②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한도는 등록금대출의 경우 한도 없이 실소요액 전액으로 하고, 생활비대출의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차등적으로 한도를 적용하여 대출할 수 있다.

<신 설>

제16조(상환의무의 발생 및 면제) ① (생 략)

② 대출원리금에 대한 상환의무는 채무자가 65세 이상으로서 국민연금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없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인정액 이하인 경우에는 이를 면제한다.

③ (생 략)

제16조의2(이자의 면제) (생 략)

<신 설>

제18조(대출원리금의 상환원칙) ① (생

제10조(대출 종류 및 한도)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등록금대출은 실소요액 전액으로 한다. 다만, 전문기술석사학위 과정·석사학위 과정 및 박사학위 과정의 경우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한도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생활비대출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한도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6조(상환의무의 발생 및 면제) ① (현행과 같음)

② -----
-----65세(다만, 전문기술석사학위 과정·석사학위 과정 및 박사학위 과정에서 학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령으로 한다)-----

-----.

③ (현행과 같음)

제16조의2(이자의 면제)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학생의 경우 재학기간에 발생하는 학자금대출 이자를 면제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구소득분위에 해당하는 사람
4. 제9조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고시하는 다자녀 가구의 자녀

제18조(대출원리금의 상환원칙) ① (현행

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자의 연간소득금액(이하 “연간소득금액”이라 한다)이 상환기준 소득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간소득금액에서 상환기준소득을 차감한 금액에 100분의 20(이하 “상환율”이라 한다)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하 “의무상환액”이라 하며, 계산한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소부담의무상환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최소부담의무상환액을 말한다)을 상환하여야 한다. 다만, 퇴직소득에 대하여는 퇴직소득금액에 상환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상환하여야 한다.

③ ~ ⑨ (생략)

제19조(장기미상환자에 대한 특례) ① ~ ⑤ (생략)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장기미상환자에 대하여 재산등의 조사절차가 진행 중에 장기미상환자가 자발적으로 대출원리금의 100분의 5 이상을 상환하거나 취업, 사업 또는 상속 및 증여 등으로 연간소득금액이 상환기준 소득을 초과한 사실을 소명하는 경우에는 재산등의 조사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

⑦ · ⑧ (생략)

제36조(소멸시효 등) ① ~ ③ (생략)

④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의 면책허가를 받은 채무자의 경우에도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원리금 청구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과 같음)

② -----

-----100
분의 20에서 100분의 40사이에서 채무자의 학위 과정별 학자금 대출기간과 대출금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하 “상환율”이라 한다)-----

③ ~ ⑨ (현행과 같음)

제19조(장기미상환자에 대한 특례)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과기간별 대출원리금 상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을 상환하여 장기미상환자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재산등의 조사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조사가 진행 중인 때에는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⑦ · ⑧ (현행과 같음)

제36조(소멸시효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삭제>